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68조의2에서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에 포함하여 보훈단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법인을 이 규칙에서의 “보훈단체”라 함

나. 감사 대상에 특별지회를 포함(안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 규칙의 근거 법률로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회도 감사 대상에 포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회계 규칙”을 “보훈단체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앞에 “제2장 예산 및 결산”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3장 수입 및 지출”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로 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고엽제법 제13조에 따른 사업

나. 보훈단체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보훈단체가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사업(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다. 5·18유공자법 제64조에 따른 사업

라. 참전유공자법 제24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3. “수익사업회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고엽제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나.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다. 5·18유공자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라. 참전유공자법 제24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4. “회계감사보고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말한다.

가. 고엽제법 제13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나. 국가유공자단체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다. 5·18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라. 참전유공자법 제24조의9(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마.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8조의8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를」(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본문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0조 앞에 “제2장 예산 및 결산”을 삽입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단체의 정관”을 “보훈단체의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단체의 회장은 제10조제1항”을 “보훈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각 단체를”을 “보훈단체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단체의 회장”을 “보훈단체의 회장”으로, “각 단체의 예산”을 “해당 보훈단체의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단체의 운영”을 “보훈단체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각 단체”를 각각 “보훈단체”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단체”를 각각 “보훈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회계감사보고서

제19조 앞에 “제3장 수입 및 지출”을 삽입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단체의 수입”을 “보훈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19조)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보훈단체”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제1항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제19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각 단체의 지출은 각 단체”를 “보훈단체의 지출은 보훈단체”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4조(중전의 제23조)제1항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단체의 본부”를 “보훈단체의 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단체의 지부·지회가”를 “보훈단체에 지부, 지회 및 국가유공자단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회(이하 “각 지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부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각 단체”를 “보훈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체”를 “해당 보훈단체”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보훈단체 중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법률 제1788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본문에 열거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제1항을 적용하여 편성·확정된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 그 예산에 따른 수입·지출 사무의 처리 및 그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가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예산과목(제11조제2항 관련)

관	항	목	세부 명세
1. 재산수입	1. 기본재산수입	1. 토지 임대수입 2. 건물 임대수입 3. 임야 수입 4. 그 밖의 수입	대지, 전, 답 등의 임대 수입 건물의 임대 수입 임야에서 발생하는 수입
	2. 재산매각수입	1. 토지 매각수입 2. 건물 매각수입 3. 임야 매각수입 4.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2. 보조금수입	1. 보조금수입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전입금	1. 수익사업전입금	1. ○○사업수입 2. ○○사업수입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
4. 투자수입	1. 투자수입	1. 배당금 2. 국채상환금 3. 국채 이자수입 4. 그 밖의 증권수입	주식 등에 대한 배당금 국채의 원금 수입 국채의 이자 수입 그 밖의 유가증권 수입
5. 전년도수입	1. 전년도수입	1. 기본재산수입 2. 재산매각수입 3. 투자수입 4. 사업수입	전년도 중에 수입으로 인식된 각 관의 수입으로서 해당 연 도 중 수입으로 확정된 것
6. 이월금	1.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잉여금 2. 이월사업비	전년도 중 종료하지 못한 사업비
7. 기부금품	1. 기부금품	1. 기부금품	
8. 차입금	1. 차입금	1. 은행차입 2. 개인차입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
9. 잡수입	1. 물품매각수입		

	2. 예금이자	1. 불용물품매각수입	비품, 집기 등 불용품 매각 수입
		1. 정기예금이자	
		2. 신탁예금이자	
		3. 통지예금이자	
		4. 그 밖의 예금이자	
	3. 잡수입	1. 변상비	재산 분실 등에 따른 변상금
		2. 위약금	계약 위반에 따른 보증금 수입
		3. 잡수입	그 밖의 잡수입

※ 비고

1. 목적은 보훈단체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관·항은 보훈단체에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3. 제18조에 따른 결산은 예산과목의 관·항·목에 따른다.

[별표 2]

고유목적사업회계 지출예산과목(제11조제2항 관련)

관	항	목	세부 명세
1. 사업수행비	1. 국고보조사업비	1. 정기총회 2. 호국·보훈의 달 행사	
	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1. 불우회원돕기 2. 위탁사업비	
	3. 단체부담사업비	1. 기념사업비	
2. 회의비	1. 총회 회의비	1. 회의비 2. 여비 3. 회원 기념품비	총회 개최 경비 총회 참석자 여비
	2. 그 밖의 회의비	1. 이사회 회의비 2. 지부장 회의비 3. 복지사업심의위원회 회의비	이사회 개최 경비, 참석자 여비 등 지부장 회의 개최 경비, 참석자 여비 등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3. 사무운영비	1. 인건비	1. 급여 2. 수당 3. 여비 4. 퇴직금	임직원의 급여 임직원의 수당 임직원의 여비 임직원의 퇴직금
	2. 그 밖의 인건비	1. 그 밖의 급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급여
	3. 일반수용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연료비 3. 차량비 4. 비품구입비 5. 비품수선비 6. 재료비 7. 인쇄비 8. 운송비 9. 그 밖의 수용비	우편, 전화, 전기 등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및 제세 건물 난방 연료비 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비품, 기계기구, 집기 등의 구 입비 도서구입비 등
4. 재산조성비	1. 시설비		

		1. 재산매입비 2. 시설비 3. 그 밖의 시설비	토지, 건물 등 매입비 건물의 신축·증축비용
	2. 재산관리비	1. 재산유지비 2. 보험료	건물 유지·보수비 등 화재보험료 등
5. 투자비	1. 투자비	1. 주식 매입비 2. 국채 매입비 3. 그 밖의 투자비	
6. 전년도지출	1. 전년도지출	1. 전년도 미지급금지출 2. 전년도 사업비지출	
7. 상환금	1. 부채상환금	1. 원금 상환금 2. 이자 지출금	차입금 원금 상환금 차입금 이자 지급금
8. 회원복지비	1. 장학금 2. 회원행사비 3. 지원금	1. 장학금 1. 회원 행사비 1. 생계지원금 2. 정착지원금 3. 재해복구지원금 4. 그 밖의 회원지원금	
9. 조직운영비	1. 조직운영지원금	1. 지부운영지원금 2. 지회운영지원금	지부 운영을 위한 지원금 지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
10. 잡지출	1. 잡지출	1. 보상금 2. 사례금 3. 소송비 4. 그 밖의 지출	
11. 예비비	1. 예비비		

※ 비고

1. 목적은 보훈단체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관·항은 보훈단체에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3. 제18조에 따른 결산은 예산과목의 관·항·목에 따른다.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지출 명세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훈단체명:

(단위: 원)

과목			전년도 예산액	해당 연도 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훈단체명: (단위: 원)

전기이월	수익사업의 수익금		수익금 사용계획						차기이월
			회원복지비 지출		단체운영비		그 밖의 설립 목적		
	귀속 주체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작성방법

- 1) “수익사업의 수익금”이란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수익금 사용계획 중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은 「보훈단체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어주시고, 단체운영비 항목은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3) “그 밖의 설립 목적”이란 보훈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 중 회원복지비 지출을 제외한 지출 경비로서 행사비 등을 말합니다.

임직원 보수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훈단체명:

(단위: 원)

구분	직위		인원	인건비		
				보조금	수익사업 수익금	합계
본부	임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직원					
지부	지부장					
	직원					

작성방법

인건비는 「보훈단체 재무·회계 규칙」 별표 1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재무상태표

제 기 20 년 월 일 현재
제 기 20 년 월 일 현재

보훈단체명: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통합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 • • • •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 • • • •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 • • • •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 • • • •						

(뒤쪽)

그 밖의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						
장기미수금						
· · · · ·						
자 산 총 계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 · · · ·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부 채 총 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 자 산 총 계						
부채 및 순자산 총계						

운영성과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훈단체명: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통합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사업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재산수입						
매출액						
• • • • •						
사업비용						
보조금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 • • • •						
수익사업원가						
매출원가						
제조원가						
• • • • •						
일반관리비						
급여						
감가상각비						
• • • • •						
사업손익						
사업외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전기오류 수정이익						
• • • • •						
사업외비용						
유형자산 처분손실						
전기오류 수정손실						
• • • • •						
경상이익						
회원복지비						
장학금						
회원 행사비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훈단체명:

(단위: 원)

전기 이월	수익사업의 수익금		수익금 사용명세						차기 이월
			회원복지비 지출		단체운영비		그 밖의 설립 목적		
	귀속 주체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작성방법

「보훈단체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사용한 내용을 적습니다.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보훈단체명:

(단위: 원)

구 분	항목 1	항목 2	항목 3
본부			
00지부			
00지부			
00지부			

작성방법

- 회원복지비는 비용으로 인식 가능한 지출만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되, 회원복지를 위한 자산 구입 등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란에 구분하여 적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를 이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 산정기준
 - 전체 회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전체 회원에게 명절·기념일의 기념 선물 등을 주는 경우
 - 일부 회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보훈단체의 회장이 회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고령회원·환자 등에게 위문품, 장학금 등을 주는 경우
 -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예시) 보훈단체의 회장이 회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회원의 가족(유가족 포함)에게 위문품, 장학금 등을 주는 경우
 - 회원복지비로 볼 수 없는 경우
 - 본부에서 지부, 지회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회(이하 “각 지부등”이라 함)에 지원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단체운영비로 보되, 회원복지에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
 - 회원복지비 인정기준을 갖춘 경우라도 혜택을 받은 대상이 임원 또는 각 지부등의 장인 경우에는 단체운영비로 봅니다.
 - 다른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지원금 등은 단체운영비로 봅니다.
 - 임직원의 워크숍, 식비 등은 단체운영비로 봅니다.
- 보훈단체 지부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사업소의 수익금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본부로 전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부에서 직접 회원복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회계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u>보훈단체 재무·회계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이하 “고엽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
된 법인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
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이하 “5·18유공자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
된 법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
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이하 “특수임무유공
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
립된 법인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고엽제법 제13조에 따른 사업

나. 보훈단체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보훈단체가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사업(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다. 5·18유공자법 제64조에 따른 사업

라. 참전유공자법 제24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3. “수익사업회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고엽제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나.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다. 5·18유공자법 제65조제1

항에 따른 수익사업

라. 참전유공자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8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

업

4. “회계감사보고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말한다.

가. 고엽제법 제13조의9에 따

른 회계감사보고서

나. 국가유공자단체법 제22조

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다. 5·18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라. 참전유공자법 제24조의9

(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

마.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8조

	<u>의8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u>
<u>제2조(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u>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u>제3조(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u> <u>보훈단체</u>----- ----- ----- ----- ----- ----- ----- ----- ----- -----
<u>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u> 각 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u> <u>보훈단체</u>----- ----- ----- ----- ----- ----- ----- ----- ----- -----
<u>제4조(회계연도)</u> 각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u>제5조(회계연도)</u> <u>보훈단체</u>----- ----- ----- ----- ----- ----- ----- ----- ----- -----
<u>제5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u> ① 각 단체의 수입·지출의 발생 및 자산·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u>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u> <u>보훈단체</u>----- ----- ----- ----- ----- ----- ----- ----- ----- -----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
<u>제6조(출납기한)</u> 1회계연도에 속하는 <u>각 단체</u> 의 수입·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
<u>제7조(회계의 구분)</u>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법 제6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 <u>고유목적사업회계</u> ”라 한다)와 법 제65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 <u>수익사업</u> ”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 “ <u>수익사업회계</u> ”라 한다)로 구분한다.	<u>제7조(출납기한)</u> ----- ---- <u>보훈단체</u> ----- ----- -----.
<u>제8조 (생 략)</u> <u>제2장 예산 및 결산</u> <u><신 설></u>	<u>제8조(회계의 구분)</u>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u>고유목적사업회계</u> 와 <u>수익사업회계</u> 로 구분한다.
<u>제9조(예산총계주의 원칙)</u> <u>각 단체</u> 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u>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u> <u><삭 제></u> <u>제2장 예산 및 결산</u>
<u>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u> ① <u>각 단체</u> 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u>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u> <u>보훈 단체</u> ----- -----.
	<u>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u> ① <u>보훈단체</u> ----- -----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각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수입·지출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각 단체의 회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각 단체(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각 단체를 포함한다)만 첨부한다.

1. ~ 5. (생략)

제12조(준예산) 각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각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유

보훈단체의 정관-----

-----.

② 보훈단체-----

-----.

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

-----.

----- 보훈단체-----

----- 보훈단체를 -----
-----.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예산) 보훈단체의 회장-----

----- 해당 보훈단체의 예산-----

를 보고하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생략)
2. 각 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생략)

제13조(예비비) 각 단체의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각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예산의 전용) ① 각 단체의 회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공간 전용 또는 같은 관 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미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예산 의결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

--.

1. (현행과 같음)
2. 보훈단체-----

3. (현행과 같음)

제14조(예비비) 보훈단체-----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단체-----

-----.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보훈단체-----
-----.

-----.

② ----- 제11조 제1항-----

로 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적립금의 적립) ① 각 단

체의 회장은 회원의 복지증진
및 해당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해 재원(財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
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적립
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그 계
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
다)를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
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생략)

④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
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기
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보고) ① 각 단체

의 회장은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
익사업회계의 수입·지출 내용
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
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

제17조(적립금의 적립) ① 보훈단

체-----

----- 보훈단체의 운영-----

-----.

② 보훈단체-----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보훈단체---

-----.

제18조(결산 보고) ① 보훈단체---

해야 한다.

② 각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각 단체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 ~ 5. (생략)

6. 법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

제3장 수입 및 지출

<신 설>

제18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① 각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각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각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

② 보훈단체-----

-----.

----- 보훈단체-----.

1. ~ 5. (현행과 같음)

6. 회계감사보고서

<삭 제>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리) ① 보훈단체-----

보훈단체의 수입 -----

-----.

② 보훈단체-----

---.

제20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보훈단체-----

-----.

다만, 각 단체의 규모가 소규모라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 단체의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0조(수입금의 수납) ① 각 단체의 수입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이 수납해야 한다.

② (생략)

③ 각 단체의 회장은 수입금을 제7조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수익금 예금통장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21조(지출의 원칙) ① 각 단체의 지출은 각 단체의 회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지출원이 행한다.

② (생략)

--- 보훈단체-----

-----.

② -----
--- 보훈단체-----
-----.

제21조(수입금의 수납) ① 보훈단체-----

----- 제20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훈단체-----
제8조-----

-----.

제22조(지출의 원칙) ① 보훈단체의 지출은 보훈단체-----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출의 방법) ① 제19조제

1항에 따른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장 보칙

<신설>

제23조(감사) ① 각 단체의 감사

는 해당 단체의 본부가 이 규칙에 따라 재무·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각 단체의 감사는 해당 단체의 지부·지회가 이 규칙에 따라 재무·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각 단체의 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는 감사 결과,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하

제23조(지출의 방법) ① 제20조제

1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장 보칙

제24조(감사) ① 보훈단체-----

----- 보훈단체의 본부-----

-----.

② 보훈단체----- 보훈단체에 지부, 지회 및 국가유공자단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회(이하 “각 지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부등이 -----.

③ 보훈단체-----

-----.

----- 해당 보훈단체-----

거나 미흡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생략) <u><신설></u>	----- ----- -----. ④ (현행과 같음) <u>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	--